

준법지원인제 잘 활용하면 득이다.



최완진

·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준법지원인의 의무채용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만 한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기업내부에 준법지원인제와 유사한 감사기능이 많은데, 옥상옥의 규제를 새로 만들어 변호사들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이중규제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 단체들은 기업의 준법의식과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진다는 주장과 함께 변호사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이 제도의 채택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원래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물론 기업의 내부통제장치로는 사외이사과 감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들은 회사의 업무과약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고, 회사조직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중요 업무에 대한 사전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차이점이 있고 기존회사가 지니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빈틈을 메워, 사전적 감시감독을

통한 기업경영의 실효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다 같이 도모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의 기업경영 환경을 보면 위법경영현상에 대한 국내외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고 있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내부에서의 사전적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며, 준법윤리경영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회사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제도중의 하나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내부통제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경영을 하다가 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부도상태를 맞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생겨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변호사들만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에는 변호사이외에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므로, 우리 회사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계속 개정되어야 하고, 기업도 응분의 사회적 책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의 범위나 속도 등은 기업현실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기업과 학계 등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여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시행과정에서 적용대상 기업 수를 적정화하고, 채용된 변호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법 회사편에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규정을 신설하여, 업무분장도 확실히 하고,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11개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내부통제 규정도 통합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할 상장회사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이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